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12.19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2-266-163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12.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년 12월 19일(금)	2025년 12월 29일(월)	2025년 12월 30일(화)	2025년 12월 31일(수)	2026년 1월 8일(목)	2026년 1월 09일(금) ~ 1월 14일(수)	2026년 1월 19일(월) ~ 1월 21일(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총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총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태화강센트럴아이파크.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이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2.19.(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4.12.1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년 12월 29일(월)	2025년 12월 30일(화)	2025년 12월 31일(수)	2026년 1월 8일(목)	2026년 1월 9일(금) ~ 1월 14일(수)	2026년 1월 19일(월) ~ 1월 21일(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40-4)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

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10.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신청자는 이를 분명히 인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울산광역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1.08.)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 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과-55258호(2025.12.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554-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8층 6개동 총 704세대

[특별공급 389세대(기관추천 71세대, 다자녀가구 71세대, 신혼부부 162세대, 노부모부양 21세대, 생애최초 6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610	01	084.9714A	84A	84.9714	27.4196	112.3910	56.6543	169.0453	34.3955	429	43	43	99	13	39	237	192	17
	02	084.9447B	84B	84.9447	28.0403	112.9850	56.6365	169.6215	34.3847	275	28	28	63	8	25	152	123	11
합 계									704	71	71	162	21	64	389	315	28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부대 복리시설,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시설별(아파트, 상가) 대지지분은 각 시설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각 세대의 전용면적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 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니, 청약신청자 및 계약자는 이를 분명히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각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 및 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형환산방법 : 주택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주택공급면적(m²) ÷ 3.3058)

※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8	5	13	
	장기복무 제대군인	8	5	1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8	5	13	
	중소기업 근로자	8	5	13	
	장애인	울산광역시	5	9	
		부산광역시	3	5	
		경상남도	3	5	
소 계		43	28	7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3	28	71	
신혼부부 특별공급		99	63	16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3	8	21	
생애최초 특별공급		39	25	64	
합 계		237	152	38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총 구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증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계약시	2차 계약후 1개월	1차 2026.07.29	2차 2026.11.13	3차 2027.03.15	4차 2027.08.13	5차 2027.12.15	6차 2028.04.14	입주정기간
84A	101동 1호 106동1,2,3호	1층	1	376,200,000	307,800,000	684,000,000	10,000,000	5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205,200,000
		2층	4	381,700,000	312,300,000	694,000,000	10,000,000	5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208,200,000
		3층	4	387,200,000	316,800,000	704,000,000	10,000,000	6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211,200,000
		4층	4	392,700,000	321,300,000	714,000,000	10,000,000	6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214,200,000
		5층	4	395,450,000	323,550,000	719,000,000	10,000,000	6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215,700,000
		6층	4	414,700,000	339,300,000	754,000,000	10,000,000	6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226,200,000
		7층	4	415,250,000	339,750,000	755,000,000	10,000,000	65,5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226,500,000
		8층	4	415,800,000	340,200,000	756,000,000	10,000,000	6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226,800,000
		9층	4	416,350,000	340,650,000	757,000,000	10,000,000	6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227,100,000
		10층	4	416,900,000	341,100,000	758,000,000	10,000,000	6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227,400,000
		11층	4	417,450,000	341,550,000	759,000,000	10,000,000	6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227,700,000
		12층	4	418,000,000	342,000,000	760,000,000	10,000,000	6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228,000,000
		13층	4	418,550,000	342,450,000	761,000,000	10,000,000	6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228,300,000
		14층	4	419,100,000	342,900,000	762,000,000	10,000,000	6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228,600,000
		15층	4	419,650,000	343,350,000	763,000,000	10,000,000	6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228,900,000
		16층	4	420,200,000	343,800,000	764,000,000	10,000,000	6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229,200,000
		17층	4	420,750,000	344,250,000	765,000,000	10,000,000	6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229,500,000
		18층	4	421,300,000	344,700,000	766,000,000	10,000,000	66,600,000	76,600,000	76,600,000	76,600,000	76,600,000	76,600,000	76,600,000	229,800,000
		19층	4	421,850,000	345,150,000	767,000,000	10,000,000	6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230,100,000
		20층	4	422,400,000	345,600,000	768,000,000	10,000,000	6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230,400,000
		21층	4	422,950,000	346,050,000	769,000,000	10,000,000	6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230,700,000
		22층	4	423,500,000	346,500,000	770,000,000	10,000,000	6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231,000,000
		23층	4	424,050,000	346,950,000	771,000,000	10,000,000	67,10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231,300,000
		24층	4	424,600,000	347,400,000	772,000,000	10,000,000	6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231,600,000
		25층	4	425,150,000	347,850,000	773,000,000	10,000,000	6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77,300,000	231,900,000
		26층	3	425,700,000	348,300,000	774,000,000	10,000,000	6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77,400,000	232,200,000
		27층	3	426,250,000	348,750,000	775,000,000	10,000,000	6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232,500,000
		28층	3	426,800,000	349,200,000	776,000,000	10,000,000	6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232,800,000
101동 3, 4호	101동 3, 4호	1층	1	359,700,000	294,300,000	654,000,000	10,000,000	5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196,200,000
		2층	2	365,200,000	298,800,000	664,000,000	10,000,000	5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199,200,000
		3층	2	370,700,000	303,300,000	674,000,000	10,000,000	5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202,200,000
		4층	2	376,200,000	307,800,000	684,000,000	10,000,000	5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68,400,000	205,200,000
		5층	2	378,950,000	310,050,000	689,000,000	10,000,000	5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68,900,000	206,700,000
		6층	2	381,700,000	312,300,000	694,000,000	10,000,000	5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208,200,000
		7층	2	382,250,000	312,750,000	695,000,000	10,000,000	5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208,500,000
		8층	2	382,800,000	313,200,000	696,000,000	10,000,000	5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208,800,000
		9층	2	383,350,000	313,650,000	697,000,000	10,000,000	5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209,100,000
		10층	2	383,900,000	314,100,000	698,000,000	10,000,000	5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209,400,000
		11층	2	384,450,000	314,550,000	699,000,000	10,000,000	5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209,700,000
		12층	2	385,000,000	315,000,000	700,000,000	10,000,000	6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210,000,000
		13층	2	385,550,000	315,450,000	701,000,000	10,000,000	6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210,300,000
		14층	2	386,100,000	315,900,000	702,000,000	10,000,000	6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210,600,000
		15층	2	386,650,000	316,350,000	703,000,000	10,000,000	6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210,900,000
		16층	2	387,200,000	316,800,000	704,000,000	10,000,000	6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211,200,000
		17층	2	387,750,000	317,250,000	705,000,000	10,000,000	6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211,500,000
		18층	2	388,300,000	317,700,000	706,000,000	10,000,000	6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211,800,000
		19층	2	388,850,000	318,150,000	707,000,000	10,000,000	6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212,100,000
		20층	2	389,400,000	318,600,000	708,000,000	10,000,000	6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212,400,000
		21층	2	389,950,000	319,050,000	709,000,000	10,000,000	60,900,000	70,900,000	70,900,000	70,900,000	70,900,000	70,900,000	70,900,000	212,700,000
		22층	2	390,500,000	319,500,000	710,000,000	10,000,000	6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213,000,000
		23층	2	391,050,000	319,950,000										

		15층	2	430,650,000	352,350,000	783,000,000	10,000,000	6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78,300,000	234,900,000
		16층	2	431,200,000	352,800,000	784,000,000	10,000,000	6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235,200,000
		17층	2	431,750,000	353,250,000	785,000,000	10,000,000	6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235,500,000
		18층	2	432,300,000	353,700,000	786,000,000	10,000,000	6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235,800,000
		19층	2	432,850,000	354,150,000	787,000,000	10,000,000	68,70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78,700,000	236,100,000
		20층	2	433,400,000	354,600,000	788,000,000	10,000,000	6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236,400,000
		21층	2	433,950,000	355,050,000	789,000,000	10,000,000	68,900,000	78,900,000	78,900,000	78,900,000	78,900,000	78,900,000	236,700,000
		22층	2	434,500,000	355,500,000	790,000,000	10,000,000	69,000,000	79,000,000	79,000,000	79,000,000	79,000,000	79,000,000	237,000,000
		23층	2	435,050,000	355,950,000	791,000,000	10,000,000	6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237,300,000
		24층	1	435,600,000	356,400,000	792,000,000	10,000,000	6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237,600,000
		1층	1	374,550,000	306,450,000	681,000,000	10,000,000	5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204,300,000
		2층	1	380,050,000	310,950,000	691,000,000	10,000,000	5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207,300,000
		3층	1	385,550,000	315,450,000	701,000,000	10,000,000	6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210,300,000
		4층	1	391,050,000	319,950,000	711,000,000	10,000,000	61,1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213,300,000
		5층	1	393,800,000	322,200,000	716,000,000	10,000,000	6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214,800,000
		6층	1	412,500,000	337,500,000	750,000,000	10,000,000	6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225,000,000
		7층	1	413,050,000	337,950,000	751,000,000	10,000,000	6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225,300,000
		8층	1	413,600,000	338,400,000	752,000,000	10,000,000	6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225,600,000
		9층	1	414,150,000	338,850,000	753,000,000	10,000,000	6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225,900,000
		10층	1	414,700,000	339,300,000	754,000,000	10,000,000	6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226,200,000
		11층	1	415,250,000	339,750,000	755,000,000	10,000,000	65,5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226,500,000
		12층	1	415,800,000	340,200,000	756,000,000	10,000,000	6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226,800,000
		13층	1	416,350,000	340,650,000	757,000,000	10,000,000	6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227,100,000
	101동 2호	14층	1	416,900,000	341,100,000	758,000,000	10,000,000	6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227,400,000
		15층	1	417,450,000	341,550,000	759,000,000	10,000,000	6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227,700,000
		16층	1	418,000,000	342,000,000	760,000,000	10,000,000	6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228,000,000
		17층	1	418,550,000	342,450,000	761,000,000	10,000,000	6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228,300,000
		18층	1	419,100,000	342,900,000	762,000,000	10,000,000	6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228,600,000
		19층	1	419,650,000	343,350,000	763,000,000	10,000,000	6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228,900,000
		20층	1	420,200,000	343,800,000	764,000,000	10,000,000	6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229,200,000
		21층	1	420,750,000	344,250,000	765,000,000	10,000,000	6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229,500,000
		22층	1	421,300,000	344,700,000	766,000,000	10,000,000	66,600,000	76,600,000	76,600,000	76,600,000	76,600,000	76,600,000	229,800,000
		23층	1	421,850,000	345,150,000	767,000,000	10,000,000	6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230,100,000
		24층	1	422,400,000	345,600,000	768,000,000	10,000,000	6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230,400,000
		25층	1	422,950,000	346,050,000	769,000,000	10,000,000	6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230,700,000
		26층	1	423,500,000	346,500,000	770,000,000	10,000,000	6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231,000,000
		27층	1	424,050,000	346,950,000	771,000,000	10,000,000	67,10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77,100,000	231,300,000
		2층	1	330,550,000	270,450,000	601,000,000	10,000,000	5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180,300,000
		3층	1	336,050,000	274,950,000	611,000,000	10,000,000	5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183,300,000
		4층	1	341,550,000	279,450,000	621,000,000	10,000,000	5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86,300,000
		5층	1	344,300,000	281,700,000	626,000,000	10,000,000	5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187,800,000
		6층	1	347,050,000	283,950,000	631,000,000	10,000,000	5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189,300,000
		7층	1	347,600,000	284,400,000	632,000,000	10,000,000	5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189,600,000
		8층	1	348,150,000	284,850,000	633,000,000	10,000,000	5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189,900,000
		9층	1	348,700,000	285,300,000	634,000,000	10,000,000	5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190,200,000
		10층	1	349,250,000	285,750,000	635,000,000	10,000,000	5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190,500,000
		11층	1	349,800,000	286,200,000	636,000,000	10,000,000	5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190,800,000
		12층	1	350,350,000	286,650,000	637,000,000	10,000,000	5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191,100,000
		13층	1	350,900,000	287,100,000	638,000,000	10,000,000	5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191,400,000
		14층	1	351,450,000	287,550,000	639,000,000	10,000,000	5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191,700,000
		15층	1	352,000,000	288,000,000	640,000,000	10,000,000	5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192,000,000
		16층	1	352,550,000	288,450,000	641,000,000	10,000,000	5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192,300,000
		17층	1	353,100,000	288,900,000	642,000,000	10,000,000	5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64,200,000	192,600,000
		18층	1	353,650,000	289,350,000	643,000,000	10,000,000	5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192,900,000
		19층	1	354,200,000	289,800,000	644,000,000	10,000,000	5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193,200,000
		20층	1	354,750,000	290,25									

102동 1호 103동1호	25층	1	357,500,000	292,500,000	650,000,000	10,000,000	5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195,000,000
	2층	2	347,050,000	283,950,000	631,000,000	10,000,000	5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63,100,000	189,300,000
102동 1호 103동1호	3층	2	352,550,000	288,450,000	641,000,000	10,000,000	5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192,300,000
	4층	2	358,050,000	292,950,000	651,000,000	10,000,000	5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195,300,000
	5층	2	360,800,000	295,200,000	656,000,000	10,000,000	5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196,800,000
	6층	2	363,550,000	297,450,000	661,000,000	10,000,000	5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198,300,000
	7층	2	364,100,000	297,900,000	662,000,000	10,000,000	56,2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66,200,000	198,600,000
	8층	2	364,650,000	298,350,000	663,000,000	10,000,000	5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198,900,000
	9층	2	365,200,000	298,800,000	664,000,000	10,000,000	5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199,200,000
	10층	2	365,750,000	299,250,000	665,000,000	10,000,000	5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66,500,000	199,500,000
	11층	2	366,300,000	299,700,000	666,000,000	10,000,000	5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199,800,000
	12층	2	366,850,000	300,150,000	667,000,000	10,000,000	5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66,700,000	200,100,000
	13층	2	367,400,000	300,600,000	668,000,000	10,000,000	5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200,400,000
	14층	2	367,950,000	301,050,000	669,000,000	10,000,000	5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66,900,000	200,700,000
	15층	2	368,500,000	301,500,000	670,000,000	10,000,000	5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67,000,000	201,000,000
	16층	2	369,050,000	301,950,000	671,000,000	10,000,000	5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201,300,000
	17층	2	369,600,000	302,400,000	672,000,000	10,000,000	5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201,600,000
	18층	2	370,150,000	302,850,000	673,000,000	10,000,000	5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201,900,000
	19층	2	370,700,000	303,300,000	674,000,000	10,000,000	5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67,400,000	202,200,000
102동 4호	20층	2	371,250,000	303,750,000	675,000,000	10,000,000	5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202,500,000
	21층	2	371,800,000	304,200,000	676,000,000	10,000,000	5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67,600,000	202,800,000
	22층	2	372,350,000	304,650,000	677,000,000	10,000,000	5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203,100,000
	23층	2	372,900,000	305,100,000	678,000,000	10,000,000	5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67,800,000	203,400,000
	24층	2	373,450,000	305,550,000	679,000,000	10,000,000	5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203,700,000
	25층	2	374,000,000	306,000,000	680,000,000	10,000,000	5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204,000,000
	2층	1	363,550,000	297,450,000	661,000,000	10,000,000	5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198,300,000
	3층	1	369,050,000	301,950,000	671,000,000	10,000,000	5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201,300,000
	4층	1	374,550,000	306,450,000	681,000,000	10,000,000	5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204,300,000
	5층	1	377,300,000	308,700,000	686,000,000	10,000,000	5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205,800,000
	6층	1	380,050,000	310,950,000	691,000,000	10,000,000	5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207,300,000
	7층	1	380,600,000	311,400,000	692,000,000	10,000,000	5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207,600,000
	8층	1	381,150,000	311,850,000	693,000,000	10,000,000	5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207,900,000
	9층	1	381,700,000	312,300,000	694,000,000	10,000,000	5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208,200,000
	10층	1	382,250,000	312,750,000	695,000,000	10,000,000	5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208,500,000
	11층	1	382,800,000	313,200,000	696,000,000	10,000,000	5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208,800,000
	12층	1	383,350,000	313,650,000	697,000,000	10,000,000	5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209,100,000
	13층	1	383,900,000	314,100,000	698,000,000	10,000,000	5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209,400,000
	14층	1	384,450,000	314,550,000	699,000,000	10,000,000	5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209,700,000
103동 2호	15층	1	385,000,000	315,000,000	700,000,000	10,000,000	6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70,000,000	210,000,000
	16층	1	385,550,000	315,450,000	701,000,000	10,000,000	6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210,300,000
	17층	1	386,100,000	315,900,000	702,000,000	10,000,000	6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210,600,000
	18층	1	386,650,000	316,350,000	703,000,000	10,000,000	6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210,900,000
	19층	1	387,200,000	316,800,000	704,000,000	10,000,000	6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211,200,000
	20층	1	387,750,000	317,250,000	705,000,000	10,000,000	6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211,500,000
	21층	1	388,300,000	317,700,000	706,000,000	10,000,000	6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211,800,000
	22층	1	388,850,000	318,150,000	707,000,000	10,000,000	6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212,100,000
	23층	1	389,400,000	318,600,000	708,000,000	10,000,000	6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212,400,000
	24층	1	389,950,000	319,050,000	709,000,000	10,000,000	60,900,000	70,900,000	70,900,000	70,900,000	70,900,000	70,900,000	212,700,000
	25층	1	390,500,000	319,500,000	710,000,000	10,000,000	6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213,000,000
	26층	1	391,050,000	319,950,000	711,000,000	10,000,000	61,1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213,300,000
	27층	1	391,600,000	320,400,000	712,000,000	10,000,000	6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71,200,000	213,600,000
103동 2호	1층	1	380,050,000	310,950,000	691,000,000	10,000,000	5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207,300,000
	2층	1	385,550,000	315,450,000	701,000,000	10,000,000	6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210,300,000
	3층	1	391,050,000	319,950,000	711,000,000	10,000,000	61,1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213,300,000
	4층	1	396,550,000	324,450,000	721,000,000	10,000,000	6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216,300,000
	5층	1	398,750,000	326,250,000	725,000,000	10,000,000	6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217,500,000
	6층	1	401,500,000	328,500,000	730,000,000	10,000,000	6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219,000,000
	7층	1	402,050,000	328,950,000	731,000,000	10,000,000	6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219,300,000
	8층	1	402,600,000	329,400,000	732,000,000	10,000,000	6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219,600,000
	9층	1	403,150,000	329,850,									

	10층	1	403,700,000	330,300,000	734,000,000	10,000,000	6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220,200,000
			404,250,000	330,750,000	735,000,000	10,000,000	6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220,500,000
	11층	1	404,800,000	331,200,000	736,000,000	10,000,000	6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220,800,000
	12층	1	405,350,000	331,650,000	737,000,000	10,000,000	6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221,100,000
	13층	1	405,900,000	332,100,000	738,000,000	10,000,000	6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73,800,000	221,400,000
	14층	1	406,450,000	332,550,000	739,000,000	10,000,000	6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221,700,000
	15층	1	407,000,000	333,000,000	740,000,000	10,000,000	64,000,000	74,000,000	74,000,000	74,000,000	74,000,000	74,000,000	222,000,000
	16층	1	407,550,000	333,450,000	741,000,000	10,000,000	6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222,300,000
	17층	1	408,100,000	333,900,000	742,000,000	10,000,000	6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222,600,000
	18층	1	408,650,000	334,350,000	743,000,000	10,000,000	64,3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222,900,000
	19층	1	409,200,000	334,800,000	744,000,000	10,000,000	6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223,200,000
	20층	1	409,750,000	335,250,000	745,000,000	10,000,000	6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223,500,000
	21층	1	410,300,000	335,700,000	746,000,000	10,000,000	6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223,800,000
	22층	1	410,850,000	336,150,000	747,000,000	10,000,000	6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224,100,000
	23층	1	411,400,000	336,600,000	748,000,000	10,000,000	6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224,400,000
	24층	1	411,950,000	337,050,000	749,000,000	10,000,000	6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224,700,000
	1층	1	358,050,000	292,950,000	651,000,000	10,000,000	5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65,100,000	195,300,000
	2층	2	363,550,000	297,450,000	661,000,000	10,000,000	5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198,300,000
	3층	2	369,050,000	301,950,000	671,000,000	10,000,000	5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67,100,000	201,300,000
	4층	2	374,550,000	306,450,000	681,000,000	10,000,000	5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68,100,000	204,300,000
	5층	2	377,300,000	308,700,000	686,000,000	10,000,000	5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205,800,000
	6층	2	412,500,000	337,500,000	750,000,000	10,000,000	6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225,000,000
	7층	2	413,050,000	337,950,000	751,000,000	10,000,000	6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225,300,000
	8층	2	413,600,000	338,400,000	752,000,000	10,000,000	6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225,600,000
	9층	2	414,150,000	338,850,000	753,000,000	10,000,000	6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225,900,000
	10층	2	414,700,000	339,300,000	754,000,000	10,000,000	6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226,200,000
	11층	2	415,250,000	339,750,000	755,000,000	10,000,000	65,5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226,500,000
	12층	2	415,800,000	340,200,000	756,000,000	10,000,000	6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226,800,000
	13층	2	416,350,000	340,650,000	757,000,000	10,000,000	6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227,100,000
	14층	2	416,900,000	341,100,000	758,000,000	10,000,000	6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227,400,000
	15층	2	417,450,000	341,550,000	759,000,000	10,000,000	6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227,700,000
	16층	2	418,000,000	342,000,000	760,000,000	10,000,000	6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228,000,000
	17층	2	418,550,000	342,450,000	761,000,000	10,000,000	6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228,300,000
	18층	2	419,100,000	342,900,000	762,000,000	10,000,000	6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76,200,000	228,600,000
	19층	2	419,650,000	343,350,000	763,000,000	10,000,000	6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228,900,000
	20층	2	420,200,000	343,800,000	764,000,000	10,000,000	6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76,400,000	229,200,000
	21층	2	420,750,000	344,250,000	765,000,000	10,000,000	6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229,500,000
	22층	2	421,300,000	344,700,000	766,000,000	10,000,000	66,600,000	76,600,000	76,600,000	76,600,000	76,600,000	76,600,000	229,800,000
	23층	2	421,850,000	345,150,000	767,000,000	10,000,000	6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230,100,000
	24층	1	422,400,000	345,600,000	768,000,000	10,000,000	6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230,400,000
	25층	1	422,950,000	346,050,000	769,000,000	10,000,000	6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230,700,000
	1층	3	380,050,000	310,950,000	691,000,000	10,000,000	5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207,300,000
	2층	3	385,550,000	315,450,000	701,000,000	10,000,000	6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210,300,000
	3층	3	391,050,000	319,950,000	711,000,000	10,000,000	61,1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213,300,000
	4층	3	396,550,000	324,450,000	721,000,000	10,000,000	6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216,300,000
	5층	3	398,750,000	326,250,000	725,000,000	10,000,000	6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217,500,000
	6층	3	434,500,000	355,500,000	790,000,000	10,000,000	69,000,000	79,000,000	79,000,000	79,000,000	79,000,000	79,000,000	237,000,000
	7층	3	435,050,000	355,950,000	791,000,000	10,000,000	6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237,300,000
	8층	3	435,600,000	356,400,000	792,000,000	10,000,000	6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237,600,000
	9층	3	436,150,000	356,850,000	793,000,000	10,000,000	6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237,900,000
	10층	3	436,700,000	357,300,000	794,000,000	10,000,000	69,400,000	79,400,000	79,400,000	79,400,000	79,400,000	79,400,000	238,200,000
	11층	3	437,250,000	357,750,000	795,000,000	10,000,000	6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238,500,000
	12층	3	437,800,000	358,200,000	796,000,000	10,000,000	69,600,000	79,600,000	79,600,000	79,600,000	79,600,000	79,600,000	238,800,000
	13층	3	438,350,000	358,650,000	797,000,000	10,000,000	6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239,100,000
	14층	3	438,900,000	359,100,000	798,000,000	10,000,000	6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239,400,000
	15층	3	439,450,000	359,550,000	799,000,000	10,000,000	6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239,700,000
	16층	3	440,000,000	360,000									

20층	3	442,200,000	361,800,000	804,000,000	10,000,000	70,400,000	80,400,000	80,400,000	80,400,000	80,400,000	80,400,000	80,400,000	241,200,000
21층	3	442,750,000	362,250,000	805,000,000	10,000,000	7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241,500,000
22층	3	443,300,000	362,700,000	806,000,000	10,000,000	7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241,800,000
23층	3	443,850,000	363,150,000	807,000,000	10,000,000	7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242,100,000
24층	2	444,400,000	363,600,000	808,000,000	10,000,000	70,800,000	80,800,000	80,800,000	80,800,000	80,800,000	80,800,000	80,800,000	242,400,000
25층	2	444,950,000	364,050,000	809,000,000	10,000,000	7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80,900,000	242,700,000
26층	2	445,500,000	364,500,000	810,000,000	10,000,000	7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243,000,000
27층	2	446,050,000	364,950,000	811,000,000	10,000,000	71,100,000	81,100,000	81,100,000	81,100,000	81,100,000	81,100,000	81,100,000	243,300,000
28층	1	446,600,000	365,400,000	812,000,000	10,000,000	7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243,600,0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유의사항

- 세대 타입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 기실 등 그 밖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단수 조정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전체 총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점 이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차 조정에 따른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 대지지분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 및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될 수 있고,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 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 심의 결과 타입별, 동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에는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이는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입니다. 또한,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공급계약 시 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계약 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타입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 공급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체료율은 공급계약서에 의거하여 산정)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공급대금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 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고, 이때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되며, 이를 사유로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을 근거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계약체결 후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계약서에 의거하여 공급금액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2차 계약금 미납에 따른 해제시에는 1차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사업주체에게 귀속), 또한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하였거나 중도금 1차 납부일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주체의 승인없이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임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있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이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 colspan="2">처리방법</th></tr></thead><tbody><tr><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 rowspan="3">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td></tr><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td></tr></tbody></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주전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주전(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thead><tr><th>구 분</th><th>울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경상남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head><tbody><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50만원</td><td>30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400만원</td><td>6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r></tbody></table>			구 분	울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구 분	울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터넷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14:00시까지 접수 해야하며, 구비서류를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 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배점 																																																															
당첨자 선정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배점항목</th> <th rowspan="2">총배점</th> <th colspan="2">배점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 <td rowspan="3">40</td> <td>4명 이상</td> <td>40</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3명</td> <td>35</td> </tr> <tr> <td>2명</td> <td>25</td> </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 <td rowspan="3">15</td> <td>3명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2명</td> <td>10</td> </tr> <tr> <td>1명</td> <td>5</td> </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 <td rowspan="2">5</td> <td>3세대 이상</td> <td>5</td> <td rowspan="2">-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 </tr> <tr> <td>한부모 가족</td> <td>5</td> </tr> <tr> <td rowspan="3">무주택기간(4)</td> <td rowspan="3">20</td> <td>10년 이상</td> <td>20</td> <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5</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r> <tr> <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 <td rowspan="3">15</td> <td>10년 이상</td> <td>15</td> <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울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0</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5</td> </tr> <tr> <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 <td>5</td> <td>10년 이상</td> <td>5</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td> </tr> </tbody> </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울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울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p> <p>(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16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 <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 </tbody> </table>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확인 시점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모집공고일</th><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tr> </thead> <tbody> <tr> <td>2025년 12월 19일</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r> </tbody> </table>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년 12월 19일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년 12월 19일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고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 10,087,437원	8,578,089원 ~ 12,009,323원	9,031,049원 ~ 12,643,467원	9,733,087원 ~ 13,626,320원	10,435,125원 ~ 14,609,174원	11,137,163원 ~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 11,528,499원	10,293,707원 ~ 13,724,941원	10,837,259원 ~ 14,449,677원	11,679,704원 ~ 15,572,938원	12,522,150원 ~ 16,696,198원	13,364,595원 ~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0,087,438원 ~	12,009,324원 ~	12,643,468원 ~	13,626,321원 ~	14,609,175원 ~	15,592,028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월천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자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토지가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면적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면적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면적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면적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면적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면적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단, 본 주택은 60m²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 신청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 colspan="2">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td> <td></td> <td>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년 12월 19일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혀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혀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균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소득 및 조건이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릅니다.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울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경상남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구 분	울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 분	울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1년 미만	1	2년 이상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녀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일 정	2025년 12월 29일(월)	2025년 12월 30일(화)	2025년 12월 31일(수)	2026년 1월 8일(목)
방 법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PC·모바일) 청약홈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マイ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등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1.08.(목) ~ 2026.01.17.(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최종 결과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6.01.08.(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로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 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중복청약(당첨 시) 처리기준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하며 또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으로서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 내에서 본인과 세대원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청약이 가능하며 둘 다 당첨될 경우 둘 다 계약이 가능합니다.
-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미적용)에 세대분리된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 또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계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 일정 및 장소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1월 09일 (금) ~ 2026년 1월 14일 (수) 10:00~17:00 ※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40-4)
유의사항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p> <p>※ 서류 제출은 견본주택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아래 구비서류 내용 중 대리인 서류 추가필요 합니다.)</p> <p>※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p> <p>※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p> <p>※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p>

■ 당첨자 제출서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구분	해당구분		제출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 서류제출, 주택공급 및 벌코니 확장 계약용 / 제출처 :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공급계약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 상의 인장 대조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주소변동사항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 유공자 제외)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 (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복무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기간 명시)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사람
기관추천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본인, 세대원 등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 거소 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제출(주택소유여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추천 기관장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 명부로 대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input type="radi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input type="radi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 문서 가능)
	<input type="radio"/>	소득증빙서류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아래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 신생아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input type="radi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input type="radio"/>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모두의 서류를 제출 -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input type="radio"/>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률 ※ 아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input type="radio"/>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input type="radi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과거 3년간의 내역)
	<input type="radi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 문서 가능)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 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아래 '소득증빙서류' 참고 <p>※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p>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아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p>※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p>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p>※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담당 의사명,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 및 직인 날인 원본)</p>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자산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아래 '자산증빙서류' 참고
일반공급 (가점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p>※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p>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 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 (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 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출입국에 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사실증명		- 30세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과거 1년간의 내역)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 (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 (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적격여부 소명 필요자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해당 주택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 폐가, 멸실 주택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자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시	○	단신부임 입증 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세대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해당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주택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대리인 신청시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 발급기준: 본인발급 / 발급용도: 서류제출 및 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신청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서류제출 및 계약/ 제출처 : 한국자산신탁㈜)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 인터넷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 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의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개인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래 안내한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p>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팩스불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p>	- 해당직장 -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p>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팩스불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명(근로계약서 또는 동일 호봉인 직급자의 근로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p>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p>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p>	- 해당직장
자영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p>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에 해당</p>	- 해당직장 -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p>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명</p>	-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법인대표자	<p>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전년도 재무재표(*직인날인, 팩스불가) ④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⑤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팩스불가) ⑥ 원천징수이행명세서(또는 배당금 지급명세서 또는 배당금 원천징수영수증)</p>	- 해당직장 -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신규사업자	<p>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p>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 등기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p>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p>	- 주민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p>① 전년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 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p>	- 해당직장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무직자		<p>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전년도 1월 1일 ~ 입주자모집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p>	- 견본주택 -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기타	<p>① 출산 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 전후 급여 신청서(확인서)</p>	- 해당직장

(근로자증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한함)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 및 소득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참고

■ 자산증빙서류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동산 소유현황 (세대원별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동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 단독·공동주택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 조회결과 인쇄 제출 -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 건축물시가표준액 → 조회결과 인쇄 제출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위택스 (www.wetax.co.kr) 이택스 (etax.seoul.go.kr)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농지법 및 조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동산 소유현황 (세대원별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열람/발급 → 부동산 → 소유현황 열람 → 조회결과 인쇄 제출 -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특별공급)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①, ②, ③ 중 해당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직장 - 세무서(또는 국세청홈택스)
근로자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사업자등록증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또는 국세청홈택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기 공통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하여야 합니다.
- ※ 소득관련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분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예 : 2011, 2013, 2015, 2018, 2020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정당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1.19.(월) ~ 2026.01.21.(수) / 3일간 / 10:00~16:00	• 당사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40-4	052-266-1630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 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합니다.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상기 자격확인 제출 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소득 기준 이내 등 확인)

※ 상기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당첨제한 등)이 발생 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 주택공급 및 발코니 확장 계약용 / 제출처 :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공급계약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거래신고 6억 이상의 경우(홈페이지 서식 게시) - 공급 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 각각 납부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금액표 하단의 인지세 납부 안내 참조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방법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하여 구매 및 출력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본인	
	○		위임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계약 시에는 본인 계약 시 필요서류와 함께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2통 제출(발급기준 : 본인 발급 / 발급용도: 주택공급 및 발코니 확장 계약 위임용 1통 / 제출처 :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공급계약)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신청불가, 인감증명서(본인발급)만 가능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서류검수 시 1통을 제출한 경우 1통만 추가 제출 ※ 서류검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후 대리 계약하는 경우 2통 추가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2.1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분은 당첨자 자격 확인이 완료된 후 상기 계약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 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별도 납부대상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

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항 납부지연가산세의 내용에 따라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대상 증서	1.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2.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 도급 증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기한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매 :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 방법	3.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재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4.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 금액	<table border="1"><thead><tr><th>기재금액</th><th>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th><th>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th><th>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th><th>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th><th>10억원 초과</th></tr></thead><tbody><tr><td>세액 (균등 납부)</td><td>2만원</td><td>4만원</td><td>7만원</td><td>15만원</td><td>35만원</td></tr><tr><td>사업주체 부담액</td><td>1만원</td><td>2만원</td><td>3만5천원</td><td>7만5천원</td><td>17만5천원</td></tr><tr><td>분양계약자 부담액</td><td>1만원</td><td>2만원</td><td>3만5천원</td><td>7만5천원</td><td>17만5천원</td></tr></tbody></table>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 (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 (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378801-01-209751	한국자산신탁(주)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당첨 동·호수의 분양대금을 확인 후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지정된 계약기간 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및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무순위 공급합니다. 잔여세대 발생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 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 또는 부정당첨자로 관리됩니다.

① 청약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③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④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⑤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⑥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당첨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약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 귀속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 자가 배상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 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 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 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 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중도금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알선 조건은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공급대금의 60%(중도금) 범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시 대출취급기관 등에 의거 공급대금의 10%(계약금 1차, 2차)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 ※ 단,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대출금융기관의 대출기준변경, 대출금융기관의 미획보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 [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대출불가시 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가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분양권의 유효성·적법성 확인 및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제48조의2 「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08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 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실내체육관,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키즈라운지, 야외주민운동공간, 경로당 등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9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동시에 계약을 진행할 예정임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84A	19,000,000	1,900,000	17,100,000
84B	19,500,000	1,950,000	17,550,000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사에는 외부창호, 확장부위 마감공사 비용 등이 포함되며, 타입별 확장 부위는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수전 및 드레인,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사양 및 크기, 창호분할 규격 및 입면 디자인,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 창호는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조명기구, 감지기, 스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 디퓨저, 냉매배관 등의 설치 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세대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가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배선기구등의 수량, 사양등이 확장형세대에 비해 축소변경되고, 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국민은행	378801-01-209764	한국자산신탁(주)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임. (정확한 계약일정은 추후 통보함)

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분류	구분					판매가	제조사	비고
	제품명	선택사항	설치대수	설치위치				
일반형 실내기	84A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9,960,000	LG전자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8,65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5,570,000		
	84B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11,910,000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10,27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530,000		
	84A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8,650,000		
			기본	3대	거실(2개소)+안방	5,570,000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10,270,000		
	84B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3대	거실(2개소)+안방	6,530,000		
고급형 실내기	84A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10,910,000	LG전자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9,45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6,060,000		
	84B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13,280,000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11,42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7,250,000		
	84A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9,450,000		
			기본	3대	거실(2개소)+안방	6,060,000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11,420,000		
	84B	공기청정 GRILL TYPE	기본	3대	거실(2개소)+안방	7,25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으로 표기합니다.
- 84A 주방특화 유상옵션 선택시 알파룸이 포함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6대)은 선택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발코니 확장옵션 선택시에만 추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금액 및 발코니확장 옵션계약 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시스템에어컨 옵션의 구입 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에 한하여 별도로 유상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주택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계약후 해지시는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금액은 아파트 공급가격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실내기, 실외기의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공동 주택공급 및 발코니 확장옵션 계약과 별도로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향후 별도 계약기간을 지정하여 진행되며, 계약행사 기간, 유상옵션 품목 및 납부계좌, 필요서류 등을 SMS, 브로셔 등을 통해 유상 옵션 계약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품목은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으며,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의 개개인의 계약가능일을 고려해 대규모 계약행사를 진행할 수 없

음을 양해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옵션 계약 전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 등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안내받으신 후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가전 및 기타 유상옵션 품목 등 포함)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추후 추가, 삭제되거나 변경(금액 포함)될 수 있으며, 추가 또는 변경되는 품목(금액 포함)에 대해서는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전에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에게 관련 내용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행사기간 외에는 관람 또는 상담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발주 사전준비, 자재 제작기간, 조달, 시공, 품질 등의 사유로 옵션 계약행사 및 별도로 공지하는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해지 또는 변경 계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 시, 기 제안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또는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 매립배관 및 콘센트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금액은 시스템에어컨 옵션 설치에 따라, 기본 설치 예정품목이었던 거실(스탠드형)+안방(벽걸이형)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기본 냉매 매립배관 감소비용과 시스템에어컨 옵션 설치로 인한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제안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품 등의 품절·품귀·생산중단,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또는 폐업,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출시, 성능 또는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동급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부속품의 사양 등이 동급 수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지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은 동일 제품일지라도 산정기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품목 목록은 추후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으며, 평면특화 등 추가 유상옵션 계약으로 가구 및 가전 설치 위치 변경으로 실내기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은 제안된 사항 외에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가 임의로 실내기 및 실외기, 드레인의 위치를 실별, 위치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 주택 신청 형별로 상이 할 수 있으니, 기 제안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거나, 계약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실내기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가 옵션상품 계약, 디자인, 시공품질 등을 사유로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설치로 인해 우물 천장(기본형, 유상옵션)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의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시스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 연출 및 냉난방을 위한 장치이며, 실제 시공 시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의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시스템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으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근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등)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계약 후 계약자 혹은 입주자에 의한 위치, 실내기 및 실외기의 냉방능력, 제품사양 등 변경요구 등 설계 변경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품목 선택시에만 홈넷(월패드) 및 아이파크 홈앱 연동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가 별도로 시중에서 에어컨을 개별 구입하여 설치할 경우 홈넷(월패드) 및 아이파크 홈앱 연동이 불가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카탈로그, 사진, 일러스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내용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인허가, 시공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

으며,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편집, 인쇄, 통지 과정상 오기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오기 등에 대하여 반드시 견본주택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상식적인 판단 하에 의문이 발생하는 사항은 견본주택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84Bm²의 경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거실 천장에 거실, 주방 부하에 맞게 실내기 2대가 설치됩니다. 무선 리모콘 작동 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2대가 동시에 작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가전 / 가구 제품

(단위 : 원, VAT포함)

상품명	주택형	세부내용	금액	제조사	비고
빌트인 냉장고	전 주택형	BC1L4AA+BC1F4AA+BC1K4AA	6,400,000	LG전자	
식기세척기	전 주택형	DUE5NSE(14인용)	1,190,000	LG전자	
전기오븐	전 주택형	MZ385EBTA	410,000	LG전자	
전기쿡탑	전 주택형	BEY3GSBIE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850,000	LG전자	
		BEI3ASB4BIE [블랙 인덕션 3구]	1,050,000		
		BEI3ANHBLIE [화이트 인덕션 3구]	1,200,000		
욕실팬	전 주택형	FHD3-C150P(1개소)	550,000	힘펠	공용욕실 또는 부부욕실 중 택1
		FHD3-C150P(2개소)	1,100,000		공용욕실+부부욕실
세대 통합 정수시스템	전 주택형	KES-504	410,000	더블루코리아	

- 유상옵션 중 식기세척기 선택 시에만 식기세척기용 전용 콘센트가 추가 설치됩니다.

- 유상옵션 중 빌트인 냉장고는(냉장고, 냉동고) 각 개별 설치 품목에 한하여 추가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③ 인테리어

(단위 : 원, VAT포함)

상품명	주택형	세부내용	금액	제조사	비고
현관중문	84A	원슬라이딩	1,690,000	HDC현대산업개발	
	84B	원슬라이딩	1,690,000		
현관특화	84A	현관 방화문 측벽 시트판넬	730,000	HDC현대산업개발	
	84B	현관 방화문 측벽 시트판넬	730,000		
시스템선반	84A	현관 팬트리 선반	420,000	HDC현대산업개발	
	84B	현관 팬트리 선반	440,000		
주방특화	84A	더블팬트리+조명형 유리플랩상부장+PET여닫이장+독립형후드	9,030,000	HDC현대산업개발	
	84B	조명형 유리플랩상부장+PET여닫이장+독립형후드	3,930,000		
주방 세라믹타일 (상판+벽)	84A	확장기본형	9,690,000	HDC현대산업개발	
	84A	주방특화형	11,770,000		
	84B	확장기본형	8,640,000		
	84B	주방특화형	10,390,000		
거실아트월 (세라믹타일+판넬)	84A	확장기본형	10,180,000	HDC현대산업개발	
	84A	주방특화형	8,350,000		
마루(국산)	84B	확장기본형	12,300,000	동화자연마루	
	84B	강마루(광폭)	1,570,000		
드레스룸 특화	84B	강마루(광폭)	1,530,000	HDC현대산업개발	
	84A	벽판넬 조명형 시스템 선반+슬라이딩도어	4,920,000		
	84B	벽판넬 조명형 시스템 선반+슬라이딩도어	6,380,000		

조명특화	84A	거실+방+욕실 (확장기본형)	7,540,000	HDC랩스	
		거실+방+욕실 (주방특화형)	7,280,000		
사각싱크볼+수전	84B	거실+방+욕실 (확장기본형)	8,070,000		
욕실비데	전 주택형	싱크볼(국산)+수전(수입)	900,000	리젘스, 노빌리	
	전 주택형	플랫 내추럴(2개소)	1,980,000	아메리칸스탠다드	

- 드레스룸 고급화 옵션 품목 적용시 드레스룸내 천장 조명은 기본형 다운라이트 조명에서 고급형 다운라이트 조명으로 변경 설치됩니다.
- 조명옵션 품목 선택시 관련 옵션조명으로 변경설치되며, 조명옵션 품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옵션 품목 행사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 (유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 추가 선택 품목은 이하 유상옵션으로 표기하며, 유상옵션은 견본주택 및 옵션 품목 행사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 유상 옵션은 인테리어 디자인의 연속성, 평면의 합리적 이용, 자재준비, 시공품질관리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옵션 선택 계약시에만 추가 선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 옵션의 판매가격은 확장기본형을 기본으로 산정되었으며, 평면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미한 차이는 공사방법 및 여건으로 인해 가격 차이가 없거나 동일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 옵션 계약은 주택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공동주택 공급 계약금액 및 발코니확장 옵션 계약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상 옵션 계약은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유상옵션의 구입 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에 한하여 별도로 유상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 유상옵션 선택 계약후 해지시는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비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은 추후 추가, 삭제되거나 변경(금액 포함)될 수 있으며, 추가 또는 변경되는 품목(금액 포함)에 대해서는 추가 선택 품목 계약 체결 전에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에게 관련 내용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 유상 옵션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옵션 계약 전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 등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안내받으신 후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가전 및 기타 유상옵션 품목 등 포함)
- 본 공고 외 유상 옵션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유상 옵션 금액은 옵션 선택에 따라 기본 제공되는 부위의 마감재를 유상옵션 선택 항목 변경으로 수반되는 공사원가를 가감한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유상 옵션 계약은 공동 주택공급 및 발코니 확장옵션 계약과 별도로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향후 별도 계약기간을 지정하여 진행되며, 계약행사 기간, 유상옵션 품목 및 납부계좌, 필요서류 등을 SMS, 브로셔 등을 통해 유상 옵션 계약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 유상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으며,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의 개개인의 계약 가능일을 고려해 대규모 계약행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 옵션 계약은 발주 사전준비, 자재 제작기간, 조달, 시공, 품질 등의 사유로 옵션 계약행사 및 별도로 공지하는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해지 또는 변경 계약이 불가합니다.
- 유상 옵션 계약은 공사 사전준비 시작 이후에는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품질문제 등으로 계약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유상 옵션 선택 시, 기 제안된 선택 품목의 마감재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의 품절·품귀·생산중단,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또는 폐업,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출시, 성능 또는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동급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힌지, 레일,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동급 수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지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유상 옵션 선택시 기 제안된 제품의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계약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디자인하고 대량공급이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여 가격을 산정되어 제공되는 품목으로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 및 사양, 상품구성, 디자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판매가격 또는 사양을 사유로 변경,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계약전 유사 제품, 또는 시중 품목 등을 검토하신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은 동일 제품일자라도 산정기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은 제안된 사항 외에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가 임의로 품목 적용 및 실별 설치 위치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 주택 신청 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기 제안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거나, 계약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유상 옵션 선택시 유상옵션 선택항목에 따라 세대별로 설치 위치 및 마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가 유상옵션 계약, 디자인, 시공품질 등을 사유로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의 상품구성, 적용 위치, 형태 등이 신청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계약이 불가합니다.
- 유상 옵션(시스템 에어컨, 평면특화 등) 설치로 인해 우물 천장(기본형, 유상옵션)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환기 디퓨져, 스프링클러, 천장배관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은 준공청소 등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유상 옵션 선택 계약 후 계약자 혹은 입주자에 의한 마감재, 설치 위치, 제품사양 등 변경요구 등 설계 변경은 불가합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카탈로그, 사진, 일러스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내용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인허가, 시공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편집, 인쇄, 통지 과정상 오기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오기 등에 대하여 반드시 견본주택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상식적인 판단 하에 의문이 발생하는 사항은 견본주택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유상 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행사기간 외에는 관람 또는 상담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 중 현관중문은 신청 주택형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시공되고,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크기차이로 인한 가격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 중 완제품으로 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유상 옵션 중 가전, 가구, 마감, 조명 옵션 등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기본 제공품이 없거나, 기본 설계대로 제공(시공)됩니다.
- 유상 옵션 중 전기쿡탑(인덕션)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 제공품인 가스쿡탑은 시공 및 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격 산정 시 가스쿡탑 설치비용을 감액하여 반영되었습니다.
- 유상 옵션 미선택으로 가스쿡탑 설치 시 가스차단기가 설치되며, 유상옵션 전기쿡탑 선택시 전기차단기가 설치됩니다. 차단기의 추가나 변경 설치는 불가합니다.
- 유상 옵션 중 주방 특화 옵션에 따라 주방가구의 수납 구성, 수납장의 크기, 가구의 컬러 디자인 및 디테일 등이 변경됩니다.
- 유상 옵션 중 빌트인 (냉동)냉장고는 주택신청형별 제공 내용이 상이하오니 제품 구성 및 모델을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중 주방 세라믹타일 옵션 미선택시 주방벽체 기본마감은 타일(300*600각), 주방상판 기본마감은 인조대리석(MMA)이며, 주방 마감재 옵션에 따라 상판의 두께 및 가구 디테일 등이 변경됩니다.
- 유상 옵션 중 욕실팬은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제품이니,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중 주방우물 간접조명이 포함되는 경우 배관·배선·안정기 설치 등으로 인하여 가림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관련 유상옵션 선택 및 시공여건을 고려 간접조명의 크기와 깊이, 등기구 사양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 중 조명 옵션 선택 시, 우물천장과 커튼박스의 크기와 위치가 기본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 벽면특화 중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옵션 미선택시, 기본 제공 거실 아트월 마감은 600x1,200각 타일, 소파 쪽 및 복도 벽체는 벽지로 마감 처리됩니다.
- 유상 옵션 중 드레스룸 특화형 미선택시, 기본 구성은 파우더+일반 드레스룸으로 설치되며, 드레스룸 내에는 일반 시스템 선반으로 가구 구성 및 디자인이 변경 설치됩니다. (조명 및 벽체 판넬마감, 슬라이딩 도어 미설치)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카탈로그, 사진, 일러스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내용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인허가, 시공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

으며,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표기항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옵션 계약시 문자발송, 분양 홈페이지, 현장 상담안내, 전화안내 등 방법을 선택해 정정고지를 할 수 있으며, 옵션계약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선택 및 추가선택품목(벽/바닥 마감재, 주방 특화, 주방특화 및 수납특화옵션, 가전류 등)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고객 간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 (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추가 선택품목공급계약을 체결·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계약과 별개사항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빌트인 가구 매립시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빌트인 설치에 따른 기존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이미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성능 개선, 디자인 개선, 단종 등),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동급 수준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힌지, 레일,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통]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와 형태, 크기,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단지 내 조경 식재(수종, 식재위치), 시설물(형태, 재질, 색채, 위치, 종류) 포장(선형, 패턴, 재료)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 (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보·차도 포장패턴, 포장선형)은 현장여건, 측량결과, 각종 인허가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조경 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포장패턴 등)은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의 추가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수량 등은 심의과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일부 조경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 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 시 각 동 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 (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수거시설 등과 인접하는 세대는 이용소음,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은 관계기관의 도시계획 및 행정절차에 따라 계획내용 또는 조성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개발로 증가하는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유치원 2권역(중앙복산반구지구), 내황초, 남외중학교, 중부학교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학생배치는 주변 개발사업 및 학생발생 추이, 교육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인접하여 내황초 방면으로 육교가 인접해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에는 도시계획에 따라 일반 시민의 통행이 가능한 공동보행통로(102동, 103동/104동, 105동 사이)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보행통로는 공공용으로 지정되어 입주민 외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라 위치, 폭, 이용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공공보행통로 등이 포함된 열린단지로 계획되어 단지 경계부에는 난간 등 차폐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인의 통행,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외부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단지계획 특성상 불가피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창호, 저층부 마감재(석재 등), 문주, 로고, 색채 등 주동 외부의 색상 및 형태는 인허가 과정 또는 설계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계획(주차구획별 주차대수 비율 포함)은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 높이,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주차대수 : 928대 (전기차 충전공간 및 단지내 상가 6대 포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충전시설 설치면 만큼 주차대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 1층에 스마트 우편함이 라인별 1개소 설치되며, 스마트 우편함의 위치와 규모 등은 대관 인허가 과정 및 현장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 1층 주차장은 택배 및 작업차량 등의 접근을 고려하여 차량동선의 유효높이는 2.7m로 계획되며,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 이상으로 계획됨
- 지하 2층 주차장은 차량동선의 유효높이는 2.3m로 계획되며,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 이상으로 계획됨
- 지하주차장의 구조는 RC 및 데크 플레이트이며, 천장은 뾰칠 및 페인트로 마감되나 일부 구간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주차대수에 전기차 충전공간은 급속 2대, 완속 46대이며, 공사 및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계사항]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이용소음 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계획된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소음 발생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커뮤니티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오수저류조(배기덕트포함), 쓰레기 분리수거장, 천창(TOP LIGHT) 상가, 관리동, 선큰, 주차램프, 외부계단, 각 동 출입구 및 장식물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석 등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에는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므로 세대 프라이버시 확보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시설물, 식재, 포장패턴 및 동선의 선형,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식재, 포장, 단지 내 시설물,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 부분에 감겨진 결속재료는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경식재 및 시설물, 측면 로고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옵션형) 탑입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기본형 선택시 마감재, 가구, 우물천장, 위생기기, 조명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개수 및 설치 위치가 견본주택과 상이합니다.
- 견본주택에 세대 내에 설치된 아래 품목은 실시공 시 제품사양 및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설비기기 :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선풍기,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 각종 수전류, 환기팬, 스프링클러
 - (2) 전기기기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화재감지기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됩니다.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생산증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 경쟁입찰 등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에어컨은 견본주택을 위한 장치로써, 본공사 시 냉방 전용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세대 시공과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및 탑입별, 옵션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구내용이동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 사항으로 지하1층(원룸2개소)에 중계기가 설치되고, 옥상층(102동, 104동, 106동)에 중계기 및 안테나가 설치됩니다. 또한, 본 공사 시 이동통신설비의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로 이동통신 사업자의 중계기 및 옥상 안테나가 변경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주요 개소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CCTV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사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등, 한전패드, 전력맨홀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 및 기타시설물 사용 시 입주 후 사용분에 대하여 공통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각 동 옥탑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승강기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이동통신설비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에 소방용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 주차 위치 및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 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부터 측뢰형 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측벽 피뢰침등 설비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 불편함이 발생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수전용량은 사업승인계획의 기본설계 예상용량대비, 실 설계 시 기기 용량 및 관련 법적기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로 이의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 관련 사항
 - 1) 홈네트워크 서버 유지보수 비용은 준공 후 3년간 무상지원 됩니다. (단, IoT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지 내 홈네트워크 서버 인터넷 회선비용은 준공 후 1년간 무상 지원)
 - 2) 세대 내 조명기구와 스위치는 직류전원(DC)에 의해 동작하는 방식으로 조명기구와 스위치 간 UTP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류전원(AC)용 조명기구와 스위치로 교체가 불가하므로, 계약자는 이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4) 견본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월패드, 통합스위치, 스마트스위치의 UI 및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5) IoT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인터넷이 가능한 어떤 사업자도 가능하며, 입주자 별도 가입 필요)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6) 각 세대에 IoT 서비스를 이용한 홈네트워크 기기제어(월패드 터치스크린 및 스마트폰용 홈네트워크 APP 을 이용한 제어 범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는 입주 기간 종료 시부터 사용 가능하며, IoT 운영사의 사업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7) 스마트홈 IoT 가전제품 연동 제어 범위는 홈 IoT 서비스 제공사와 제휴된 가전제품에 한합니다.
 - 8) 세대 내 월패드는 음성인식 기술은 유상옵션 상품입니다 .(추후 유상옵션 행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설계사항]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화조 설치 구역에 따른 정화조 배기탑이 동 옥탑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 인근 및 필로티 내에는 제연 훈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펌프/전기실 등은 본 공사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펌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방식으로 외부에 루버(배기캡)이 설치됩니다.(단, 건축평면구조상 직접배기방식이 불가능한 평형은 공동배기방식으로 타평형과 배기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상부에 위치한 세대는 해당 옥상으로의 출입 및 이용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철물류, 가구(시스템 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실 시공된 마감자재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상옵션 품목은 제조사, 형태 및 마감재(하드웨어, 색상, 재질 등)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및 전시모형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의 가구 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타입별, 옵션선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된 세대는 평면 및 마감재의 유상옵션이 적용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기본형 / 선택형 평면 및 마감재를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마감재 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팜플렛 등을 참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주방 상판 및 벽, 거실에 설치된 세라믹판넬은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전에 기본형 마감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생활 가구류(침대, 책상, 책장, 소파 등), 생활 가전류(세탁기, 건조기, 밥솥, TV, 식기세척기, 기타 주방 및 침실 소형가전 등), 침장 및 커튼류, 그림 액자, 인테리어 소품 등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 및 마감재 판넬 이음부위의 위치와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타일 및 인조석, 천연석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 줄눈 탑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 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마루 자재의 구성 부재 중 심재의 재료는 내수합판 또는 고밀도 섬유판 중에서 시공됩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각 세대의 최종 마감재로 가려지는 천장 및 가구 뒷면 및 바닥과 욕실의 욕조의 바닥과 뒷면, 세면대 뒷면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벽, 천장 부분에 가구류(신발장, 불박이장, 화장대, 주방가구, 욕실가구, 거울 등)의 설치로 인하여 노출되지 않는 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최종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단위세대 우물천장의 높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확장형 선택 시 인접 세대의 확장 유무에 따라 단열재 설치에 따른 이형 벽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반 스탠딩형 냉장고 설치 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다소 돌출되어 주방 동선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 등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손끼임 방지 장치는 본공사 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 색상, 디테일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키큰장은 가전 유상옵션에 따라, 형태 및 구성이 상이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일반 가구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연석, 인조석 및 타일류는 본 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장식장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시 가구변형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내부에서 전열 가전제품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방 벽,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타일은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거실아트월 옵션선택 시 적용되는 대형 세라믹판넬은 파손 시 교체가 어렵거나, 견본주택과 패턴과 문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시스템에어컨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다용도실 내 세탁기, 건조기 등의 설치 공간 규격을 입주전에 사전 확인하여 반입 및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다용도실에 세탁기 등 가전제품 또는 기타 물품을 반입,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들의 크기에 따라 다용도실 출입문을 탈거 후 설치하여야 하거나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본공사 시 다용도실, 욕실,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 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성분)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결과에 의한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 단자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시 출입문(도어)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공사 시 마루자재, 인조대리석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의 자재 특성상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인조대리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의 품질상 하자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고,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공사 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도배지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 무관함.
- 본 공사 시 석재류 또는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현관, 주방, 거실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본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구배치 및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가변형 벽체 선택 옵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및 색상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 마감기구 사양 및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 위치, 설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는 생산업체 부도,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등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세대 내 가구 일체형 조명기구와 같은 복합기구 적용 및 현관센서등, 대피공간조명등은 일괄소등 스위치의 동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구에 내장된 간접조명기구는 별도 벽부형 스위치가 설치되지않고 가구내에 스위치가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 가스쿡탑 설치시 가스차단기, 전기쿡탑 및 전기+가스쿡탑제품(하이브리드) 설치시 가스, 전기차단기가 설치되며, 추가 설치 및 변경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난방,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주방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개폐시 바닥이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에서 천장 마감 사이에 덕트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한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방식으로 외부에 루버(배기캡)이 설치됩니다.(단, 건축평면구조상 직접배기방식이 불가능한 평형은 공동배기방식으로 타평형과 배기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은 캡(플러그)마감되며, 별도로 가스기기와의 연결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 가스기기(가스렌지 등)와 도시가스배관의 연결(별도 수수료 발생)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서비스지역 고객센터(관할 지자체 및 구청 문의)로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스쿡탑 설치시 가스차단기, 전기쿡탑 설치시(가스,전기차단기), 전기+가스쿡탑제품(하이브리드) 설치시(가스,전기차단기)가 설치되며, 추가 설치 및 변경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작동 시 실내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어 순간적인 음압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비의 정상 작동에 따른 현상이며, 급기 확보(창문 개방 또는 환기장치 가동) 시 실내 압력이 균형을 이루어 정상 상태로 안정화됩니다.

2) 에어컨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거실과 안방 이외의 실에 에어컨 설치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배관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안방) 설치됩니다.(에어컨 옵션 선택 세대 제외)
- 시스템에어컨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옵션행사 시점에 별도로 문의바랍니다.

3) 화장실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하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최하층 단위세대의 경우 욕실 상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환기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됩니다.
- 환기유니트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에는 필터가 설치되며,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교환주기는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 부담입니다.

5) 발코니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 될 수 있으며, 각 실내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발코니 미확장 세대 포함)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용도실(세탁기실 및 발코니)의 바닥은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의 배수로 인하여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수전 사용으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하부층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하층 세대의 경우 발코니1 내 바닥 배수구 및 수전 위치가 구조 간섭으로 인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소방

- 발코니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화재시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를 위한 시설이므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 평상시 하향식 피난구 덮개를 밟거나 덮개 위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누수를 고려하여 발코니내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기타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최종 마감재로 가려지는 천정 및 가구 뒷면 및 바닥과 욕실의 욕조의 바닥과 뒷면, 세면대 뒷면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입주기준 최종 마감재로 설치된 설비, 소방, 환기, 가스, 위생, 마감기구, 오배수 등의 부분에 대해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안내 사항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내진 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MMI 등급, I ~VII)으로 표기

구분	내진 능력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 - 최대지반가속도 0.204g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에 대한 등급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G-SEED-P-2022-0974-9
건축주	주식회사 경선프라임	인증기관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준공(예정)일	2024년 12월 1일	유효기간	2022. 08. 29.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554-5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층 수	지하 2층, 지상 29층	앞선 날까지	
면적	121,160.9971㎡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구성건축사사무소	설계자	(주)구성건축사사무소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서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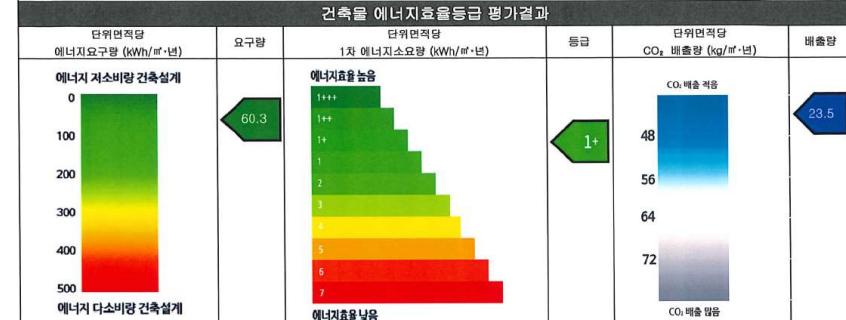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22-주-예-11-0149
준공연도	20241201	평가자	안상민
주 소	울산 중구 반구동 554-5	인증기관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층 수	지하2층 / 지상29층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121,160.9971㎡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구성건축사사무소	설계자	(주)구성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1+등급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m²·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3.0	48.1	37.7	10.1
급탕	30.7	36.7	27.3	7.5
조명	6.6	6.6	18.1	3.1
환기	5.9	5.9	16.2	2.8
합계	60.3	97.3	99.3	23.5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설치된 [V]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8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택배차량 진입가능)	램프 출입구 : 2.7m 이상(택배차량 진입가능)
지하 2층	2.3m	2.3m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5-101-0007600호	일금 삼천육백사십일억육천사백오십만원정 ₩364,164,5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흄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자(매도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1566-9009)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별도]

구 분	건축감리	정보통신, 소방감리
회사명	(주)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탑이앤지(주)
금 액	3,164,946,960	65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301-81-19298	620-81-50375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차입형토지신탁

- 본 사업은 위탁자인 (주)정선프라임이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정선프라임이고, 한국자산신탁(주)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중 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아래 '차입형토지신탁'에 관한 사항은 본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에 우선합니다.
- 본 사업은 위탁자인 (주)정선프라임,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 그리고 시공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간에 체결한 차입형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공동주택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계약금 및 잔금)납부는 '한국자산신탁(주)'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 관리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 공급대금 또는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주)정선프라임 및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가 체결한 차입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입니다. 본 공급계약 대상재산에 대한 시공상의 모든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후 하자를 불문하고, 오시공, 미시공, 변경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은 위탁자 및 시공사가 부담하고, 한국자산신탁(주)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한국자산신탁(주)가 매도인의 지위, 사업주체로서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의무, 오 시공, 미 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수의무, 공법상 의무 및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정선프라임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고, 공급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위탁자 겸 수익자 (주)정선프라임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한국자산신탁(주)는 분양계약 상 매도인의 제반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 책임을 포함하여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시행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정선프라임이 부담합니다.
- 한국자산신탁(주)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상 인허가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시행 위탁사	시공사	시행 수탁사
상 호	(주)정선프라임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한국자산신탁(주)
법인등록번호	160111-0549472	110111-6740008	110111-2196304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51, 3층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9층(한강로3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йт타워(역삼동)

■ 현장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견본주택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40-4					
현장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554-5번지 일원					
운영시간	오전 10:00 ~ 오후 18:00					
분양문의	052-266-1630					
주요일정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기간
	2025.12.19.(금)	2025.12.29.(월)	2025.12.30.(화)	2025.12.31.(수)	2026.01.08.(목) ~ 2026.01.14.(수)	2026.01.19.(월) ~ 2026.01.21.(수)
홈페이지	https://태화강센트럴아이파크.com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공급(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및 공급(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최근까지(2025.10.3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반영된 참고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 표시사항

- 등록업자 : 한국자산신탁(주)
- 등록업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йт타워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70012
- 사업방식 : 차입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00%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분양대금 완납시 개별등기
- 사업계획승인 :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5302 (승인번호 : 2022-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